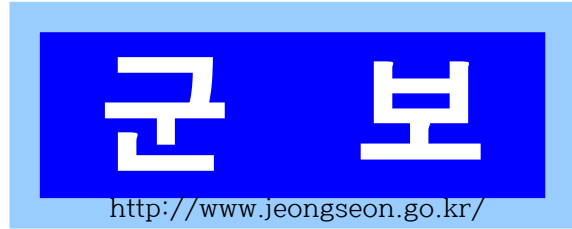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96호 2016. 9. 7.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6-86호 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 해제 고시 1
- 정선군 고시 제2016-90호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고시 14
- 정선군 고시 제2016-9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및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
- 정선군 고시 제2016-93호 예미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2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6-75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공람·공고 25
- 정선군 공고 제2016-759호 2016년도(FY2015) 정선군 지방재정공시 공고 26
- 정선군 남면 공고 제2016-7호 2016 하반기 남면복지회관 교양강좌 강사모집 및 신청안내 70
- 정선군 남면 공고 제2016-8호 2016 하반기 남면복지회관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 ... 7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6-86호

산림정화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 내 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 8. 12.

정 선 군 수

1. 임야 소재지 : 정선읍 애산리 산175번지 외 38필지

2. 구 역 면 적 : 176.97ha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
합 계	7개소	39필지	176.97
계		3필지	1.42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75	0.85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76	0.34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623임	0.23
계		1필지	6.38
구 충현탑	정선읍 봉양리	산5-1	6.38
계		2필지	9.61
성불사	정선읍 북설리	산1	0.49
성불사	정선읍 북설리	산3-1	9.12
계		21필지	58.46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42	2.39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43	0.04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44	0.71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45	2.67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46	1.14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30	2.37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42-2	0.15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30-2	1.56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28	6.27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26	2.08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24	6.26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23	0.79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21	13.59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19	4.98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18	2.03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14-2	1.87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11	5.66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10	0.21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9	1.98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6	0.89
한반도지형	정선읍 덕송리	산2	0.79
계		2필지	15.48
동강자연휴양림	신동읍 운치리	산239	0.59
동강자연휴양림	신동읍 운치리	산238-2	3.36
동강자연휴양림	신동읍 운치리	산238	9.56
동강자연휴양림	신동읍 운치리	산240	0.16
동강자연휴양림	신동읍 운치리	산238-1	0.04
동강자연휴양림	신동읍 운치리	산241	0.83
동강자연휴양림	신동읍 고성리	산17-2	0.94
계		2필지	8.10
고성산성	신동읍 덕천리	산19	4.56
고성산성	신동읍 고성리	산319	3.54
계		3필지	77.51
민동산	남면 무릉리	산135	69.42
민동산	남면 무릉리	산138	4.74
민동산	남면 무릉리	산139	3.35

2. 지정 년월일 : 2016. 8.

3. 지정사유 : 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

4. 행위제한

○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1호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2호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033-560-2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화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 내 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 8. 12.

정 선 군 수

1. 소 재 지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합 계	7개소	322필지	978.06	978.06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12필지	36.36	36.36
신치	정선읍 신월리	33필지	69.64	69.64
군언	정선읍 광하리	12필지	55.69	55.69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17필지	161.42	161.42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23필지	83.17	83.17
몰운대	화암면 몰운리	15필지	33.09	33.09
광대곡	화암면 몰운리	18필지	29.90	29.90
괴병골	남면 유평리	12필지	22.68	22.68
자뭇골	남면 무릉리	26필지	75.99	75.99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31필지	113.88	113.88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10필지	5.22	5.22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36필지	62.28	62.28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11필지	55.90	55.90
항골	북평면 북평리	21필지	50.51	50.51
구미정	임계면 봉산리	6필지	14.41	14.41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16필지	31.41	31.41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23필지	76.51	76.51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합 계	7개소	322필지	978.06	978.06
계		12필지	36.36	36.36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16	0.33	0.33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79	1.16	1.16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80	0.34	0.34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81	0.24	0.24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82	2.13	2.13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83	1.19	1.19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85	22.48	22.48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91-6	2.07	2.07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91-7	1.64	1.64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91-8	1.38	1.38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91-9	1.56	1.56
범바위	정선읍 애산리	산191-10	1.84	1.84
계		33필지	69.64	69.64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35	1.34	1.34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36	0.87	0.87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37	6.07	6.07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40	2.17	2.17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42	2.06	2.06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43	1.39	1.39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44	0.56	0.56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46	0.59	0.59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48	3.12	3.12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50	1.19	1.19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51	3.96	3.96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54	6.37	6.37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55	2.86	2.86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56	3.33	3.33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64	0.19	0.19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68	4.69	4.69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69	1.21	1.21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71	0.74	0.74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72	0.56	0.56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92	0.65	0.65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94	8.13	8.13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95	1.68	1.68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96	0.94	0.94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97-2	0.48	0.48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98-1	0.68	0.68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199-1	4.61	4.61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215-2	0.26	0.26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211	0.76	0.76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212-1	2.73	2.73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215-1	3.36	3.36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216-1	0.71	0.71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224	1.03	1.03
신치	정선읍 신월리	산221	0.35	0.35
계		12필지	55.69	55.69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195	5.35	5.35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2-1	12.39	12.39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2-2	3.96	3.96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3	0.52	0.52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4	7.66	7.66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5-1	3.17	3.17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6	2.64	2.64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6-1	4.94	4.94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7	11.03	11.03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8	0.59	0.59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49	1.93	1.93
군언	정선읍 광하리	산250	1.51	1.51
계		17필지	161.42	161.42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1	10.35	10.35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2	3.38	3.38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3	0.40	0.40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4	3.19	3.19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5	2.63	2.63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6	4.90	4.90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29	4.95	4.95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30	3.06	3.06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45	61.05	61.05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49	7.33	7.33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64	36.69	36.69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65	2.65	2.65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66	2.97	2.97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04	4.51	4.51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05	3.82	3.82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06	6.69	6.69
직전마을	사북읍 사북리	산108	2.85	2.85
계		23필지	83.17	83.17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01-3	7.88	7.88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02	0.49	0.49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03-1	1.98	1.98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06	0.21	0.21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07	3.96	3.96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08	3.25	3.25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16	5.65	5.65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17	2.52	2.52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18	2.85	2.85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19	1.83	1.83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23-2	13.12	13.12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23-3	4.79	4.79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24	1.28	1.28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25	0.64	0.64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26-1	0.68	0.68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26-2	0.50	0.50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27	5.38	5.38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27-1	1.65	1.65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40	14.23	14.23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41	6.64	6.64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82	1.00	1.00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84	1.90	1.90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거미대	화암면 석곡리	산186	0.74	0.74
계		15필지	33.09	33.09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43	5.18	5.18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33	0.79	0.79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34	0.39	0.39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35	0.11	0.11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38-1	1.03	1.03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38-2	2.17	2.17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39	1.93	1.93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42	7.51	7.51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43	0.38	0.38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44	4.36	4.36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49	3.47	3.47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50	0.69	0.69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51	1.88	1.88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52	2.65	2.65
물운대	화암면 물운리	산153	0.55	0.55
계		18필지	29.90	29.90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1	0.54	0.54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2	0.47	0.47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4	0.04	0.04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5	0.31	0.31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25	1.09	1.09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26	3.37	3.37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27-1	1.94	1.94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28	3.53	3.53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30	1.17	1.17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35-1	5.82	5.82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35-2	5.13	5.13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36	2.72	2.72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37	0.63	0.63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38-1	0.60	0.60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38-2	0.24	0.24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39	0.78	0.78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40	0.73	0.73
광대곡	화암면 물운리	산41	0.79	0.79
계		12필지	22.68	22.68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76	3.63	3.63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77	0.71	0.71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79	3.95	3.95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82	2.42	2.42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246	2.14	2.14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247	2.49	2.49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248	0.62	0.62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249	1.17	1.17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250	1.97	1.97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251-1	1.26	1.26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252	1.26	1.26
괴병골	남면 유평리	산253	1.06	1.06
계		26필지	75.99	75.99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20-3	3.18	3.18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32	9.91	9.91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33	0.19	0.19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34	0.74	0.74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35	1.25	1.25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41	3.96	3.96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42	1.84	1.84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46	8.17	8.17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47	2.67	2.67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50	2.03	2.03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48	0.57	0.57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56	0.66	0.66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57	4.06	4.06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58	9.71	9.71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60	3.27	3.27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64	2.78	2.78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68	0.73	0.73
자뭇골	남면 무릉리	산570	0.49	0.49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자못골	남면 무릉리	산575	2.38	2.38
자못골	남면 무릉리	산576	3.39	3.39
자못골	남면 무릉리	산578	2.29	2.29
계		31필지	113.88	113.88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4-2	6.82	6.82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4-3	5.28	5.28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4-4	5.04	5.04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5-1	3.56	3.56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6-1	1.02	1.02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7	2.42	2.42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8-1	6.71	6.71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9-1	0.20	0.20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9-3	0.10	0.10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10	0.62	0.62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47-1	2.52	2.52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50	9.20	9.20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51	5.66	5.66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52-1	2.68	2.68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43	5.69	5.69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53	9.21	9.21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55	5.31	5.31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67	8.96	8.96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68	4.95	4.95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69	4.10	4.10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71	4.30	4.30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72	3.22	3.22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73	1.94	1.94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74	2.38	2.38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94	2.62	2.62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95	1.11	1.11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97	0.90	0.90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99	2.77	2.77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100	1.83	1.83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101	1.05	1.05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자개골	여량면 구절리	산103	1.71	1.71
계		10필지	5.22	5.22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16	0.11	0.11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17	0.14	0.14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21	0.45	0.45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23	0.44	0.44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24	0.40	0.40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25	0.61	0.61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26	1.28	1.28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28	0.25	0.25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35	1.09	1.09
아우라지	여량면 여량리	산138	0.45	0.45
계		36필지	62.28	62.28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24	2.92	2.92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25	1.32	1.32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26	5.42	5.42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27	0.39	0.39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28	1.14	1.14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30	10.17	10.17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32	0.03	0.03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45-1	0.35	0.35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45-2	0.24	0.24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49-1	2.37	2.37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49-2	1.06	1.06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51	1.21	1.21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52	0.05	0.05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54	0.81	0.81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55	0.25	0.25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56	0.98	0.98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57	1.10	1.10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58	1.73	1.73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59	0.25	0.25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61	0.66	0.66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67	0.88	0.88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68	0.44	0.44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69	1.98	1.98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70	0.36	0.36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96	0.82	0.82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97	0.47	0.47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01-1	0.89	0.89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01-2	5.65	5.65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15	5.20	5.20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16	1.89	1.89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19	10.01	10.01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54	0.09	0.09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55	0.45	0.45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56	0.28	0.28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57	0.18	0.18
숙암계곡입구	북평면 나전리	산158	0.24	0.24
계		11필지	55.90	55.90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163	19.50	19.50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166	0.95	0.95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167	6.34	6.34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168	0.80	0.80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170	0.18	0.18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290	0.30	0.30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291	0.19	0.19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292	21.31	21.31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298	3.70	3.70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309-1	0.99	0.99
숙암계곡	북평면 숙암리	산309-2	1.64	1.64
계		21필지	50.51	50.51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62	3.20	3.20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63	4.59	4.59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64	3.45	3.45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69	0.29	0.29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71	2.63	2.63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72	0.36	0.36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73	3.37	3.37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76	2.74	2.74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95	9.15	9.15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95-1	0.33	0.33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96	1.37	1.37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100	0.24	0.24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101	0.37	0.37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105	1.81	1.81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125	3.15	3.15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132	3.62	3.62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136	3.73	3.73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153	1.63	1.63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154	1.69	1.69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155	2.66	2.66
항골	북평면 북평리	산202	0.13	0.13
계		6필지	14.41	14.41
구미정	임계면 봉산리	산153	2.18	2.18
구미정	임계면 봉산리	산159	4.11	4.11
구미정	임계면 봉산리	산160	4.57	4.57
구미정	임계면 봉산리	산164-1	0.99	0.99
구미정	임계면 봉산리	산168	1.52	1.52
구미정	임계면 봉산리	산170	1.04	1.04
계		16필지	31.41	31.41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50	12.48	12.48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53-1	1.41	1.41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55	2.38	2.38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55-1	0.40	0.40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55-2	0.28	0.28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68	2.43	2.43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73	2.20	2.20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74	0.84	0.84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81	0.60	0.60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87	1.83	1.83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89	1.11	1.11

산 이름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해제면적(ha)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90	0.36	0.36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92	2.46	2.46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93	0.49	0.49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94-1	1.44	1.44
미락숲	임계면 낙천리	산194-2	0.70	0.70
계		23필지	76.51	76.51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24	3.89	3.89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25	7.16	7.16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32	6.60	6.60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33	1.78	1.78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34	0.79	0.79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35	1.51	1.51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36	2.13	2.13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37-1	4.45	4.45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38	7.19	7.19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39	3.20	3.20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40	1.70	1.70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43	2.38	2.38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44	2.62	2.62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46	2.88	2.88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47	4.64	4.64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50	2.34	2.34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51	0.55	0.55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52	1.13	1.13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53	4.19	4.19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53-2	4.19	4.19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54-1	4.11	4.11
아우라지	임계면 도전리	산55	4.70	4.70

2. 지정해제일자 : 2016. 8.

3. 지정해제사유 : 산간오지 및 하천변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033-560-2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6-90호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정 선 군 수

1.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현황

구분	지역명	위 치	지정(변경)내용			지정(변경)사유	비고
			유 형	등급	면적(m ²)		
당초	세대2	정선읍 봉양리 861 일원	자연+인공	C	6,500 (L=320m)	낙석 및 붕락 등 붕괴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변경	세대2	정선읍 봉양리 861 일원	자연+인공	C	8,100 (L=475m)	비탈면 연속성 고려, 낙석 및 붕락 위험성 증가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확대지정 필요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강원도 정선군(안전건설과)

3.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일자 : 2016. 8. 26.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타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군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구 분	지역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당 초	세대2	2016.1 ~ 2018. 12	12,900	· 도로확폭 320m ▷ 피암터널 L=280m, 접속도로 L=40m	
변 경	세대2	2016.1 ~ 2018. 12	12,900	· 도로확폭 420m ▷ 피암터널 L=280m, 접속도로 L=140m, 기대가옹벽 L=130m 등	

※ 정비계획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처 : 정선군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 033-560-2496)

붙 임 1.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당초)

□ 지정 고시도면



□ 지정 지형도면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 변경 고지도면



□ 변경 지형도면



□ 현황사진



[사진설명] 하부암 이탈로 상부 급경사 구간 위험성 증가



[사진설명] 상부이완암괴 다수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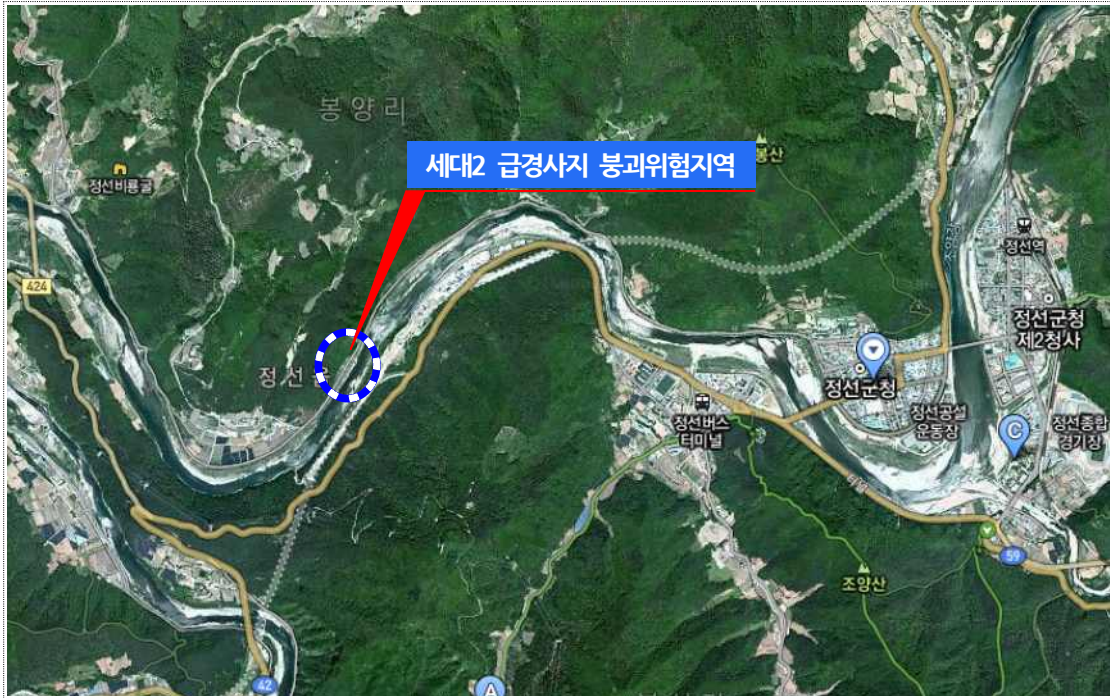
[사진설명] 비탈면 하부 탄질셰일층 분포



[사진설명] 층상구조 및 파쇄심화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위치도(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61번지 일원)



□ 전경사진



정선군고시 제2016- 9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및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2.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강원도 고시 제2016-325호(2016.8.12.)) 및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경일(고토일)탄광의 갱내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장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정화시설의 설치를 통해 환경서비스를 증진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3번지 일원

다. 면 적 : 7,870㎡(시설결정), 8,462㎡(용도지역 변경)

라.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마.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바.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및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정선군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219,720,000	-	1,219,720,000	100.00	
도 시 지 역	계		42,548,998	-	42,548,998	3.49
	주 거 지 역	소 계	5,144,298	감) 8,462	5,135,836	0.42
		제1종일반주거지역	1,176,466	감) 8,462	1,168,004	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3,616,350	-	3,616,350	0.29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3	-	80,713	0.01
		준주거지역	270,769	-	270,769	0.02
	상업 지역	소 계	1,125,099	-	1,125,099	0.09
		일반상업지역	1,108,244	-	1,108,244	0.09
		근린상업지역	16,855	-	16,855	0.00
	공업 지역	소 계	619,126	-	619,126	0.06
		일반공업지역	306,497	-	306,497	0.03
		준공업지역	312,629	-	312,629	0.03
	녹지 지역	소 계	35,660,475	증) 8,462	35,668,937	2.92
		보전녹지지역	3,348,109	-	3,348,109	0.27
		생산녹지지역	905,292	-	905,292	0.07
		자연녹지지역	31,407,074	증) 8,462	31,415,536	2.58
도 시 지 역 외 지 역	계		1,177,171,002	-	1,177,171,002	96.51
	관리 지역	소 계	224,156,102	-	224,156,102	18.46
		보전관리지역	94,172,463	-	94,172,463	7.80
		생산관리지역	27,563,037	-	27,563,037	2.26
		계획관리지역	102,420,602	-	102,420,602	8.40
	농림지역		944,933,914	-	944,933,914	77.38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	-	8,080,986	0.67

나. 고한읍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2,730,162	-	52,730,162	100.00	
도시지역	도 시 지 역 계		7,979,944	-	7,979,944	15.13	
	주거지역	소 계	1,075,797	감) 8,462	1,067,335	2.02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424,609	감) 8,462	416,147	0.79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620,394	-	620,394	1.18	
		제 3 종 일반주거지역	21,247	-	21,247	0.04	
		준 주 거 지 역	9,547	-	9,547	0.02	
	상업지역	소 계	199,876	-	199,876	0.38	
		일 반 상 업 지 역	199,876	-	199,876	0.38	
		근 름 상 업 지 역	-	-	-	0.00	
	공업지역	소 계	24,675	-	24,675	0.05	
		일 반 공 업 지 역	-	-	-	0.00	
		준 공 업 지 역	24,675	-	24,675	0.05	
	녹지지역	소 계	6,679,596	증) 8,462	6,688,058	12.68	
		보 전 녹 지 지 역	207,394	-	207,394	0.39	
		생 산 녹 지 지 역	-	-	-	0.00	
		자 연 녹 지 지 역	6,472,202	증) 8,462	6,480,664	12.29	
관 리 지 역		소 계	10,299,829	-	10,299,829	19.53	
		보 전 관 리 지 역	2,003,724	-	2,003,724	3.80	
		생 산 관 리 지 역	53,556	-	53,556	0.10	
		계 획 관 리 지 역	8,242,549	-	8,242,549	15.63	
농 름 지 역			32,090,389	-	32,090,389	60.86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2,360,000	-	2,360,000	4.48	

다. 대상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율 (%)	결 정 (변 경) 사 유	비 고
		기정	변경				
1	고한읍 고한리 산113번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8,462	100	◦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고한 도시지역

2.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환경 기초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고한읍 고한리 산113임 일원	-	증)3,270	3,270	금회	
신설	3	환경 기초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고한읍 고한리 산113임 일원	-	증)4,600	4,600	금회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	환경기초시설	· 시설 면적 : 3,270m ²	· 경일(고토일)탄광의 갱내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장 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정화시설의 설치를 통해 환경서비 스를 증진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 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군계획시설 결정
3	환경기초시설	· 시설 면적 : 4,600m ²	

※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도면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16-93 호

예미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예미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예미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농어촌 낙후 마을 다수 존재
 -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삶의 질 개선을 목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 본 사업 추진
3. 사업비 : 5,996,000천원
 - 국고 (2,064,000), 지방비(3,785,000), 자부담(147,000)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예미4리(용거리)
 - 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 철거 : 총 19동
 - 슬레이트 지붕 개량 : 총 19동
 - 주택 수리 : 총 3동
 - 경관정비 : 담장정비(354m), 공원조성(4,085㎡), 마을가꾸기 1식
 - 기반시설 정비 : 소방도로(371m), 방음분진차단막(353m), 주차장조성(1,174㎡), 무선방송시설 1식
 - 소프트웨어 :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5.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6. 사업기간 : 2015 ~ 2017(3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 033-56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6-75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1-3번지 일원
3.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조서
 - 가.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⑫	향교 앞 노외주차장	정선읍 봉양리 381-3번지 일원	-	증)1,343	1,343	금회	

○ 주차장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⑫	향교 앞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A = 1,343㎡	· 정선 5일장 및 향교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 조성된 주차장과 노후· 불량 주택을 편입하여 구역 정형화를 통한 도시 경관 증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신설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도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정선읍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16. 9. 2. ~ 2016. 9. 19.)
7. 의견제출 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정선읍사무소로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와 정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6-75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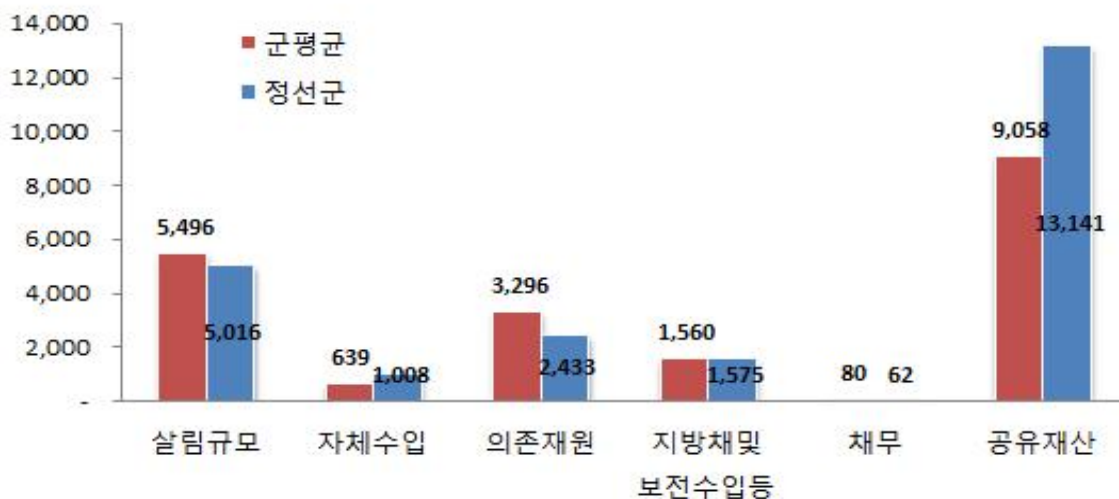
2016년 정선군 재정공시(결산)

2016. 8. 31.

정선군수 (인)

- ◆ 우리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16억원으로, 전년대비 3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0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8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33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75억원입니다.
-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군 채무는 6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58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5년도에 토지외 794건(2,14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289건(9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3,14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군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 억원)



- ◆ 우리 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496억원)보다 48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39억원)보다 369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296억원)보다 863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0억원)보다 18억원이 적고, 군민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55천원)보다 4천원이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058억원)과 비교하여 4,083억원이 많습니다.
- ◆ 우리 군의 20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2.73%이며(전국 평균 51.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74%(전국 평균 76.3%)입니다.
- ◆ 우리 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4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살림규모, 의존재원은 유사 자치단체 보다 다소 낮은 반면 자체수입, 공유재산은 유사 자치단체 보다 높고 채무규모는 적어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재정규모 확대를 위해 자체수입의 확대와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gseon.go.kr)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안영식 (033-560-2220)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 입 결 산	5,016	4,634	382	5,496	5,203	293
	세 출 결 산	3,732	3,519	213	4,046	3,887	15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32.73	21.98	10.75	19.63	17.55	2.08
	재정자주도[최종]	70.74	65.94	4.8	63.6	64.82	△1.22
	통합재정수지[최종]	114	26	89	38	54	△16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31	159	172	329	301	2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	1	△0	6	20	△1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62	89	△27	80	94	△1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0	12	△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0	2
	채권 현황	35	39	△5	64	67	△3
	기본경비 집행현황	23	24	△1	28	29	△0
	자치단체 청사 관리 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집행현황	416	403	12	471	452	1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3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 경비 집행 현황	3	3	0	5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8	8	0	9	9	△0
	연말지출비율	112	233	△121	173	202	△28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현황	47	45	2	55	57	△2
	금고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 회 복 지 비		497	456	40	687	618	6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94	376	18	457	484	△27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 가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축 제 경 비		14	13	2	17	15	2
⑦ 기금/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기 금		401	394	7	124	119	5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3,141	11,095	2,046	9,058	8,206	852
	물 품 현 재 액		53	50	3	63	59	4
	출 자 · 출 연 금 집 행 현 황		9	14	△5	24	23	1
	출 자 · 출 연 기 관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공 기 업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 무 제 표	자 산 총 계	21,174	20,446	728	21,003	20,156	846
		부 채 총 계	331	159	172	329	301	28
		수 익 총 계	3,220	3,327	△107	3,837	3,675	162
		비 용 총 계	2,690	2,709	△19	3,021	2,897	123
	재 정 분 석 과 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세 지 출 현 황		60	43	17	39	38	2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 축 제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 사 신 축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 의 계 약 현 황		30	130	△100	77	81	△4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 수 · 처 리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346	330	16	249	224	25
	조 기 집 행 실 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 부 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채 발 행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 간 투 자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1,643	416,288	9,343	34,693	41,319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420,895	406,973	442,442	463,408	501,643

▶ 결산 총계기준

연평균 증가율 등을 이용하여 2011년~2015년 세입규모 변화 등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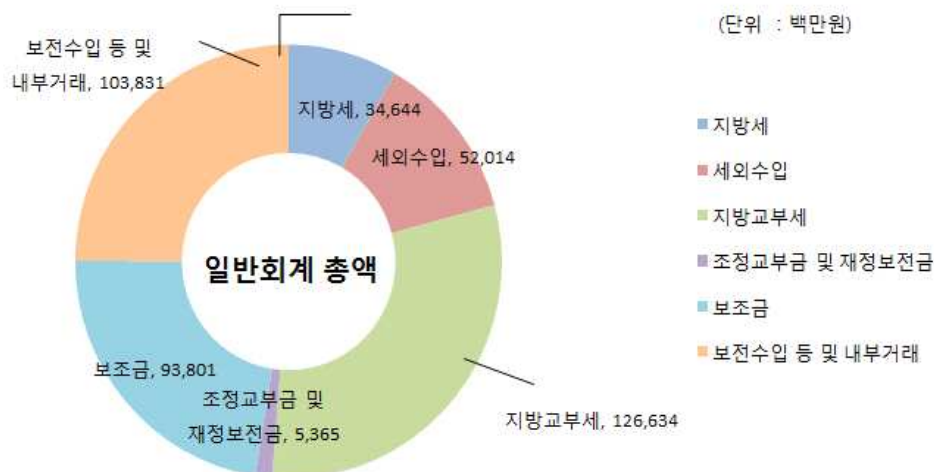
❖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1,390	100%	332,192	100%	370,248	100%	389,551	100%	416,288	100%
지 방 세	30,534	8.9%	31,403	9.5%	32,339	8.7%	33,000	8.5%	34,644	8.3%
세외수입	96,406	28.2%	79,431	23.9%	84,974	23.0%	24,514	6.3%	52,014	12.5%
지방교부세	113,840	33.4%	125,427	37.8%	139,091	37.6%	139,424	35.8%	126,634	30.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670	1.4%	4,198	1.3%	5,654	1.5%	3,718	1.0%	5,365	1.3%
보 조 금	95,939	28.1%	91,734	27.6%	108,189	29.2%	110,394	28.3%	93,801	22.5%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0	0.0%	0	0.0%	78,501	20.2%	103,831	24.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30,534,349	31,402,544	32,339,349	33,000,367	34,643,916
인구수(명)	40,181	39,915	39,985	39,425	39,19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60	787	809	837	884

세입 결산액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2-2. 세출결산

☐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73,216	305,370	8,538	17,990	41,319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53,777	334,423	357,159	351,876	373,216

▶ 결산 총계기준

❖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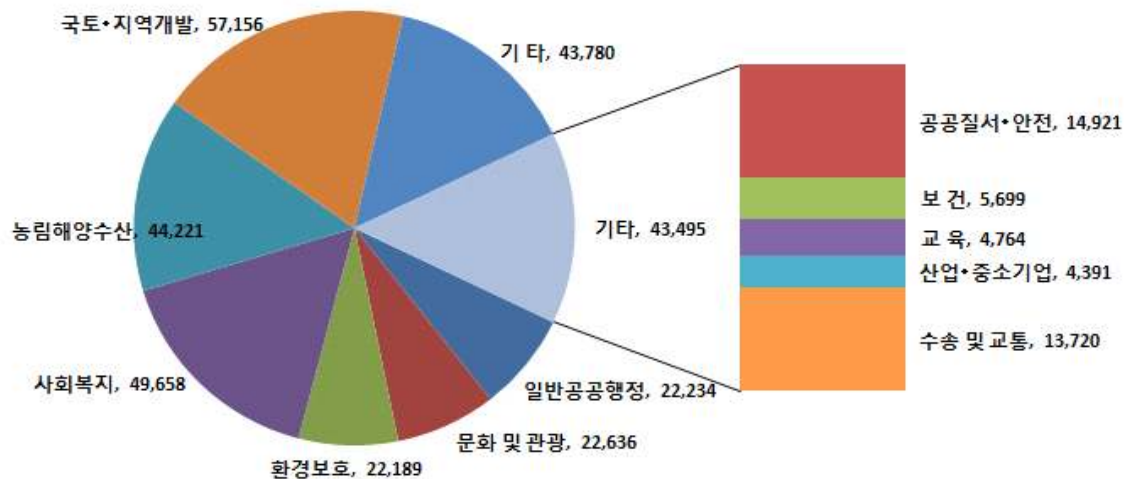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5,408	100%	271,765	100%	291,885	100%	285,894	100%	305,370	100%
일반공공행정		17,002	6%	25,277	9%	24,538	8%	22,979	8%	22,234	7%
공공질서·안전		13,883	5%	9,239	3%	15,598	5%	15,101	5%	14,921	5%
교육		5,128	2%	4,230	2%	4,020	1%	4,399	2%	4,764	2%
문화 및 관광		22,012	8%	20,347	7%	28,617	10%	23,306	8%	22,636	7%
환경보호		22,252	8%	21,032	8%	21,049	7%	21,834	8%	22,189	7%
사회복지		43,885	15%	35,821	13%	39,009	13%	45,640	16%	49,658	16%
보건		4,471	2%	4,572	2%	5,096	2%	5,528	2%	5,699	2%
농림해양수산		39,578	14%	40,696	15%	48,041	16%	43,139	15%	44,221	14%
산업·중소기업		1,022	0%	3,799	1%	2,784	1%	1,858	1%	4,391	1%
수송 및 교통		15,292	5%	10,715	4%	10,546	4%	13,038	5%	13,720	4%
국토·지역개발		65,244	23%	58,529	22%	52,431	18%	46,688	16%	57,156	1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타		35,639	12%	37,507	14%	40,155	14%	42,385	15%	43,780	14%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85,407,521	271,764,834	291,884,592	285,894,133	305,369,661
인구수(명)	40,181	39,915	39,985	39,425	39,197
주민 1인당 세출액	7,103	6,809	7,300	7,252	7,791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97,637	369,137	128,500	2,128,457	33,387	
자치단체(a)		495,249	366,822	128,427	2,117,373	33,076	
지방공공기관(b)		10,484	10,411	73	11,184	311	
교육재정(c)		0	0	0	0	0	
내부거래(A+B)		8,096	8,096	0	100	0	

❖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7%	8.0%	32.7%	0.0%	0.0%	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2.8%	39.5%	46.1%	0.0%	0.0%	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1%	1.1%	0.0%	0.0%	0.0%	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	0.1%	0.1%	0.0%	0.0%	0.0%
	세입결산액 계	497,637	495,249	10,484	0	8,096	0
	자체수입	100,914	100,833	7,443	0	7,362	0
	세출결산액 계	369,137	366,822	10,411	0	8,096	0
	인건비결산액	43,236	39,805	3,431	0	0	0
	행사관련경비	3,894	3,890	4	0	0	0
	업무추진비	516	507	1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 부채/자산	1.6%	1.6%	2.8%	0.0%	0.0%	0.0%
	■ 부채/환금자산	19.0%	18.8%	217.1%	0.0%	0.0%	0.0%
	■ 차입부채/재정자금	3.7%	3.7%	0.0%	0.0%	0.0%	0.0%
	자산	2,128,457	2,117,373	11,184	0	100	0
	부채	33,387	33,076	311	0	0	0
	환금자산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5,869	175,726	143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 금융상품)	168,642	168,500	141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6,232	6,232	0	0	0	0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정선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7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E)
32.73% (24.04%)	343,551 (343,551)	112,442 (82,591)	231,109 (231,109)	0 (0)	0 (29,851)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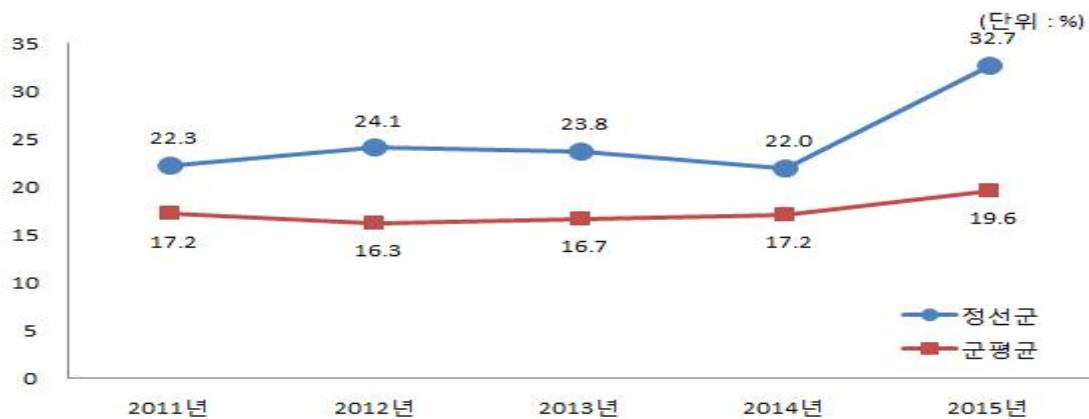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22.32%	24.14%	23.78%	21.98%	32.7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랜드 입지로 인해 타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2014년까지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다가 2015년부터 세외수입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3-2. 재정자주도[최종]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정선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0.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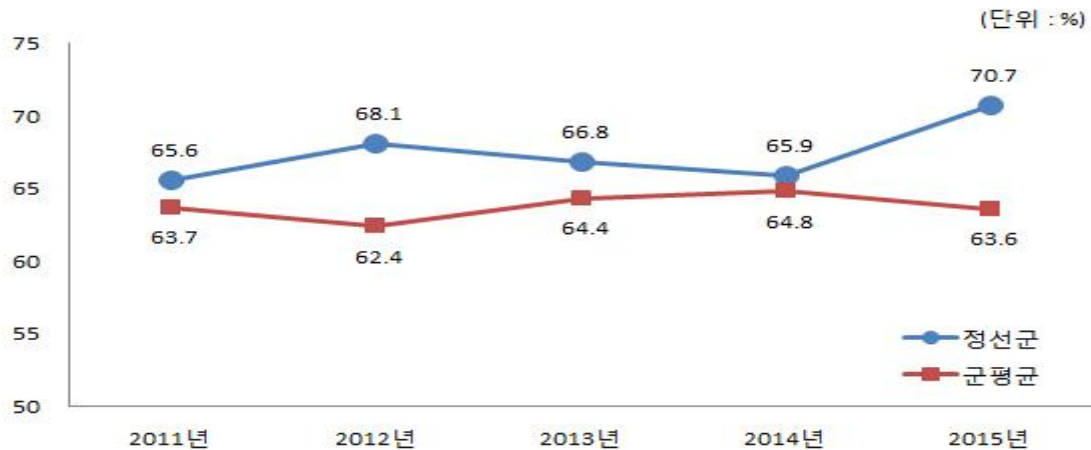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0.04% (62.05%)	343,551 (343,551)	243,029 (213,178)	100,522 (100,522)	0 (0)	0 (29,851)

-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5.60%	68.11%	66.84%	65.94%	70.7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2014년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도비로 편성하다가 2015년부터 세외수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정선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 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3,793	365,461	212	300	88	33,180	365,549	-21,755	11,425
일반회계	313,700	325,308	140	300	160	29,670	325,468	-11,768	17,902
기타 특별회계	21,038	29,386	72	0	-72	2,968	29,314	-8,275	-5,308
공기업 특별회계	7,485	8,827	0	0	0	543	8,827	-1,343	-800
기 금	1,570	1,940	0	0	0	0	1,940	-369	-369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2,255	-18,382	-21,813	-21,512	-21,755
통합재정수지 2	2,552	4,022	6,151	2,555	11,425

☞ 2015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1은 2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2는 11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세입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217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순세계잉여금 331억원을 합할시 지출을 충당하고 114억원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통합재정수지1, 2에서 적자와 흑자를 달리하는 이유는 이월사업비의 지출 때문입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정선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2,055,283	2,128,557	73,274
통합부채	15,933	33,117	17,184
유동부채	4,983	23,075	18,092
장기차입부채	6,232	4,729	-1,503
기타비유동부채	4,717	5,313	596

- ▶ '15년 결산 순계기준
- ▶ 우리 정선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2,044,605	2,117,373	72,768	
부채(B)	15,873	33,076	17,203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0.78	1.56	0.78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권 및 미지급금 등
 -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2014, 201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부채비율 (B/(A-B)×100)
합 계	46,343	90	0.19	46,298	68	0.15
직영 소 계	46,183	30	0.07	46,157	27	0.06
기업 상수도	46,183	30	0.07	46,157	27	0.06
공사 소 계	160	60	60	141	41	41
공단 시설관리공단	160	60	60	141	41	41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0,518	0	0	10,519	0	0
출연기 소 계	10,518	0	0	10,519	0	0
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94	0	0	194	0	0
정선장학회	10,324	0	0	10,325	0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 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정선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일 반 회 계	8,938	-2,706	0	2,706	6,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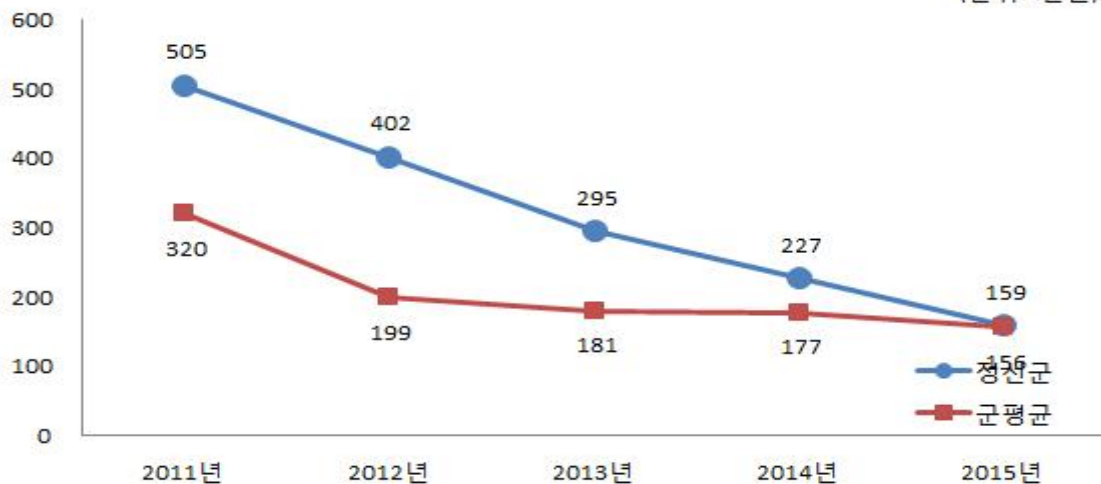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20,288	16,038	11,788	8,938	6,232
인구수	40,181	39,915	39,985	39,425	39,197
주민 1인당채무(천원)	505	402	295	227	159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우리 군은 채무감소를 위해 매년 지방채 조기상환을 실시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30%이상 채무를 줄였으며,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3,200	12,300	7,900	8,700	9,700
발행액(B)					
발행비율(B/A*100)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927	-472	0	472	3,455
일 반 회 계		3,433	-347	0	347	3,086
특별 회계	소 계	367	-75	0	75	292
	의료급여기금	6	-5	0	5	1
	주택사업	361	-70	0	70	291
기금 회계	소 계	127	-50	0	50	77
	사회복지기금	127	-50	0	50	77

▶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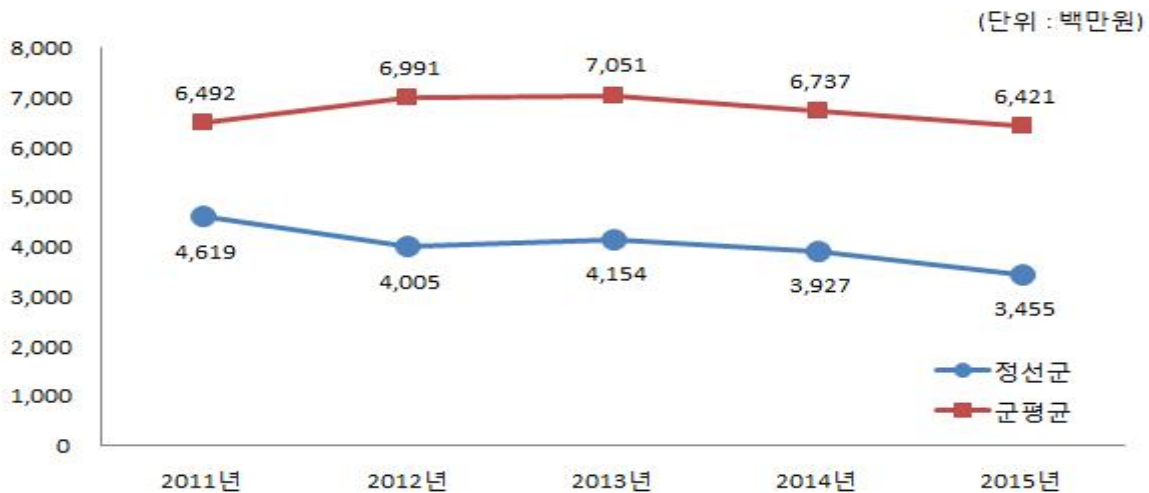
❖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4,619	4,005	4,154	3,927	3,45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정선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5,370	2,302	0.75%	
일반운영비	305,370	798	0.26%	
여 비		1,134	0.37%	
업무추진비		278	0.09%	
직무수행경비		67	0.02%	
자산취득비		25	0.0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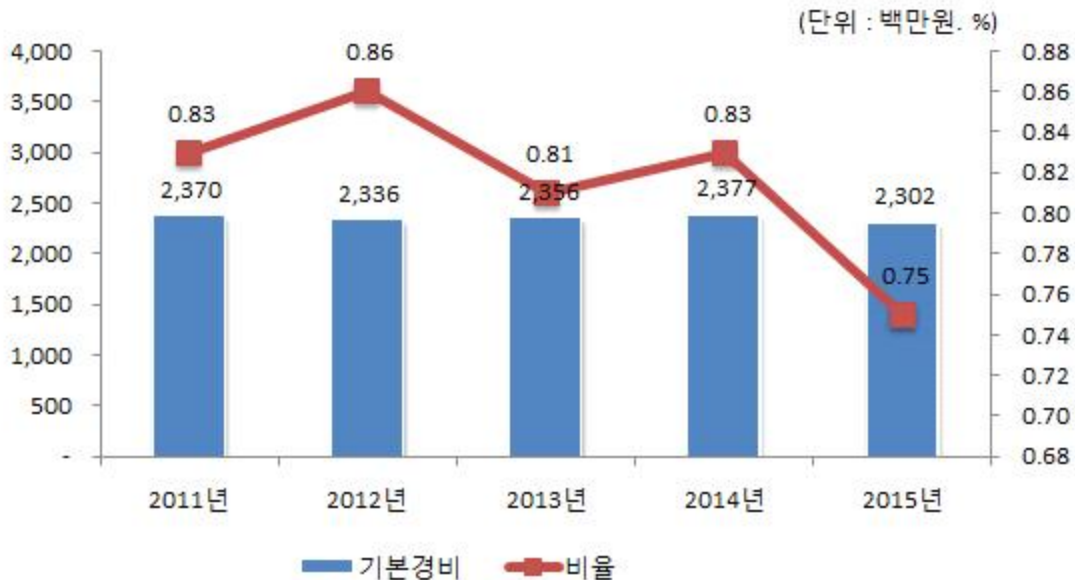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5,408	271,765	291,885	285,894	305,370
기본경비	2,370	2,336	2,356	2,377	2,302
비율	0.83%	0.86%	0.81%	0.83%	0.75%

- ▶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 우리 정선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 3,765㎡에 비해 정선군은 1,203㎡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위 : m², 백만원)

정선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정선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562	3,765	-1,203	0

-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정선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305,370	41,575	13.61%	
인건비(101)	305,370	33,008	10.81%	
직무수행경비(204)		934	0.31%	
포상금(303)		1,660	0.54%	
연금부담금 등(304)		5,972	1.96%	

-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85,408	271,765	291,885	285,894	305,370
인건비(B)	32,967	35,132	37,746	40,329	41,575
인건비비율(B/A)	11.55%	12.93%	12.93%	14.11%	13.61%

-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정선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5,370	351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05,370	147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4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5,408	271,765	291,885	285,894	305,370
업무추진비	307	314	337	340	351
비율	0.11%	0.12%	0.12%	0.12%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1】 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별첨2】 와 같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정선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05,370	319	0.10%	7	45,594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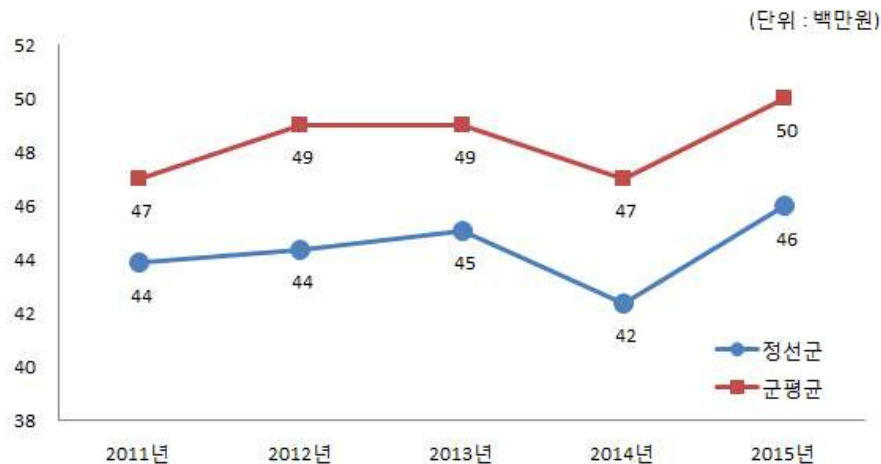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5,408	271,765	291,885	285,894	305,370
의회경비	307	311	316	297	319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1%	0.11%	0.10%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3,871	44,383	45,131	42,445	45,59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명)(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	7	2,47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 국외여비 주요 집행액, 1인당 집행액 등을 설명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02.07. ~02.12	2015년 의원 해외연수	일본	7(4)	14,524
2015.11.03. ~11.06	2015년 정선군의회 의원 2차 연수	일본	5(4)	2,8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정선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 (B)	맞춤형복지비 (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59	305,370	381	0.27%	9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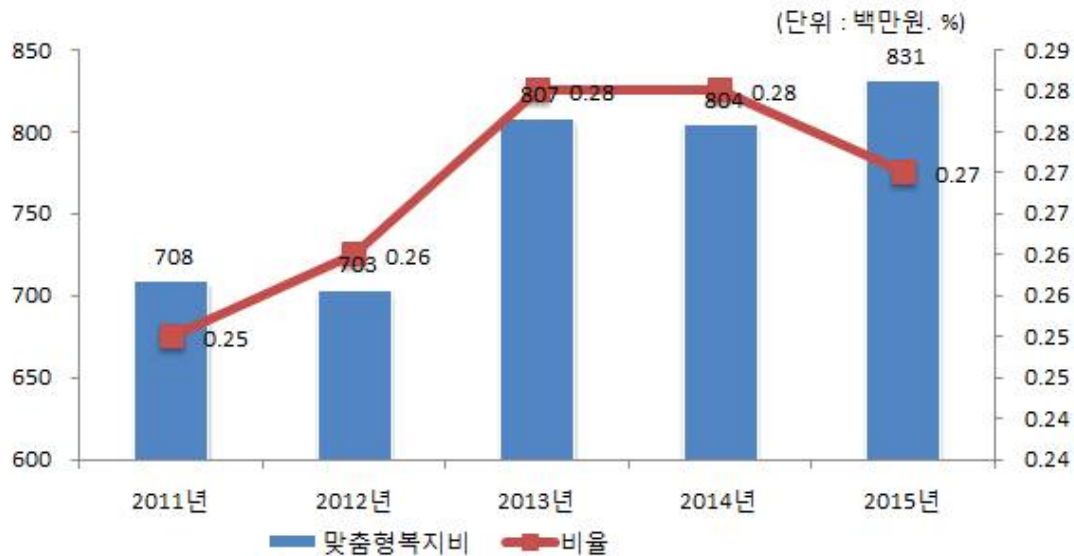
❖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24	791	801	825	859
세출결산액 (B)	285,408	271,765	291,885	285,894	305,370
맞춤형 복지비 (C)	708	703	807	804	831
비율(C/B)	0.25	0.26	0.28	0.28	0.27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78	888	1,008	975	968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 우리 정선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8,578	11,240	14.30%
시설비 (401-01)	77,412	11,175	14.44%
감리비 (401-02)	884	47	5.28%
시설부대비 (401-03)	216	7	3.4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66	11	16.7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분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11,459	86,750	79,343	72,250	78,57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3,781	14,272	13,900	23,349	11,240
비율(B/A)	21.34%	16.45%	17.52%	32.32%	14.3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집행을 추진에 함에 따라 연말집행이 감소하였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550	4,726	176
지방세	1,964	2,322	358
세외수입	2,586	2,404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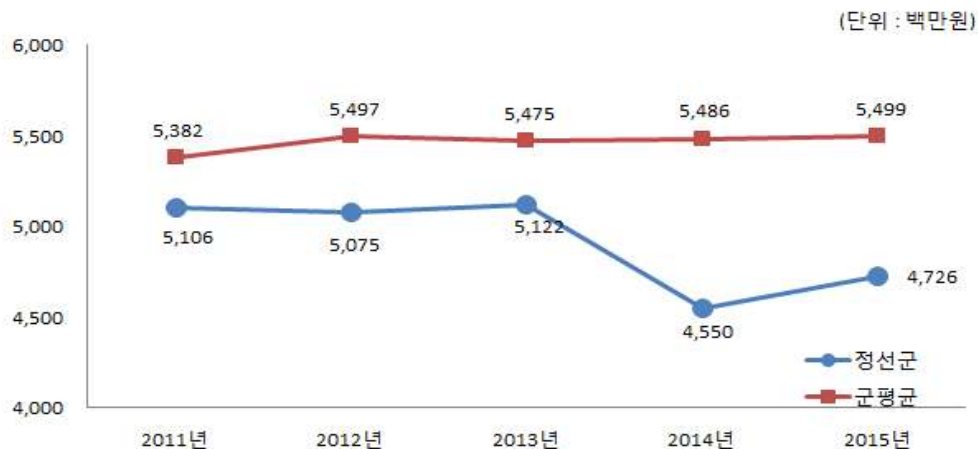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5,106	5,075	5,122	4,550	4,726
지방세	2,158	2,301	2,048	1,964	2,322
세외수입	2,949	2,774	3,073	2,586	2,404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 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00	75	75	75
제1금고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13.01.01~ '16.12.31.	300	75 (당초)	75	75 ('15.4월)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 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9,658	6,418	5,834	9,164	22,452	2,156	824	2,810	0
국 비	24,650	3,890	2,108	3,732	13,909	166	0	845	0
시·도비	5,050	642	427	1,958	1,334	508	0	181	0
시·군·구비	19,958	1,886	3,299	3,474	7,209	1,482	824	1,78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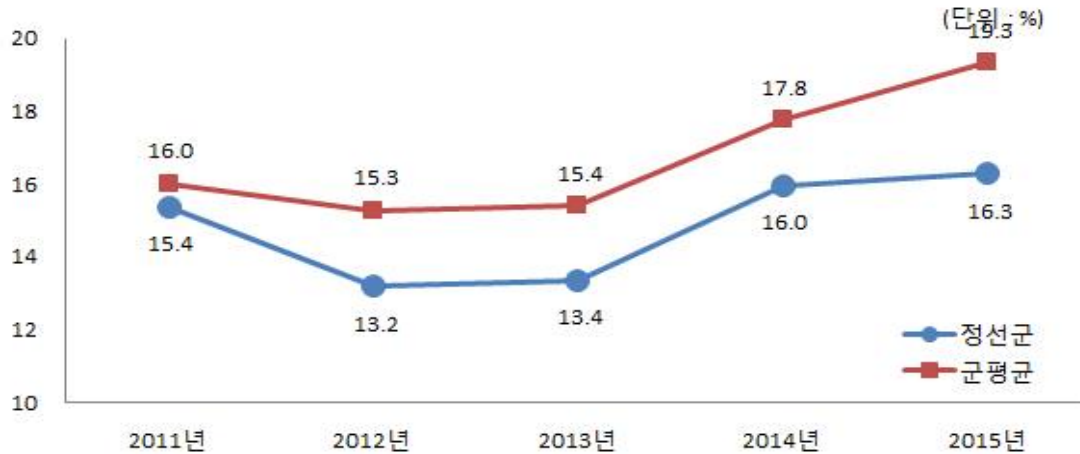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85,408	271,765	291,885	285,894	305,370
사회복지분야(B)	43,885	35,821	39,009	45,640	49,658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38	13.18	13.36	15.96	16.26
인구수 (C)	40,181	39,915	39,985	39,425	39,19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92	897	976	1,158	1,26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 고
계	305,370	39,355	12.89%	
민간경상보조 (307-02)	305,370	8,208	2.69%	
사회단체보조 (307-03)		1,238	0.41%	
민간행사보조 (307-04)		2,439	0.80%	
사회복지보조 (307-10)		7,495	2.45%	
민간자본보조 (402-01)		4,756	1.5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5,408	271,765	291,885	285,894	305,370
지방보조금(민간)	6,843	8,289	41,725	37,550	39,355
비율	2.40%	3.05%	14.29%	13.13%	12.89%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별첨3】 과 같습니다.

◆ 2015년도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별첨4】 와 같습니다.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5】 와 같습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및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내역
임산물(잣) 가공공장 지원사업	박종억	임산물(잣) 가공공장	144m ²	2015	100	1	100	고한읍 고토일길 85	신규취득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진기천	저온저장고	33m ²	2015	30	1	30	사북읍 사북리 164-1	신규취득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김은우	버섯재배사	330m ²	2015	34.3	1	36.3	북평면 나전리 산120	신규취득
2015년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덕암리개발위원회(전남표)	임산물저온저장고	165m ²	2015	-	1	154	임계면 덕암리 339-5	신규취득

2015년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문래1리개발 위원회(남성 준)	임산물 공동작업장	100m ²	2015	-	1	59.2	임계면 문래리 765번지	신규 취득
2015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꽃내산촌생태 마을(김동주)	임산물 공동작업장	165m ²	2015	-	1	76.6	임계면 임계리 267	신규 취득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	유기남	산나물증숙 시설	식	2015	5	1	10	화암면 물운리 230-4	신규 취득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	엄형식	산나물증숙 시설	식	2015	5	1	10	정선읍 비룡동길 363	신규 취득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	장관덕	산나물증숙 시설	식	2015	5	1	10	임계면 태봉안길 279-1	신규 취득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	윤종대	산나물증숙 시설	식	2015	5	1	10	정선읍 봉양리 624-1	신규 취득
저온저장고지원	김효준	저온 저장고	33m ²	2015	15	1	30	정선읍 광하리 464-2	신규 취득
저온저장고지원	유성일	저온 저장고	33m ²	2015	15	1	30	정선읍 광하리 335-1	신규 취득
저온저장고지원	최덕남	저온 저장고	33m ²	2015	15	1	30	정선읍 덕우리 69	신규 취득
저온저장고지원	나승남	저온 저장고	33m ²	2015	15	1	30	정선읍 덕천리 454-3	신규 취득
저온저장고지원	정용기	저온 저장고	33m ²	2015	15	1	30	신동읍 조동리 499-1	신규 취득
저온저장고지원	엄병석	저온 저장고	33m ²	2015	15	1	30	임계면 낙천리 415	신규 취득
농식품제조시설 현대화지원	임계농협	산나물 증숙시설	1식	2015	42	1	84	임계면 봉산리 433	신규 취득
농식품제조시설 현대화지원	임계농협	농산물 건조기	3대	2015	8	3	16	임계면 봉산리 433	신규 취득
배추절임시설지 원	유천3리레일 바이크마을영 농조합법인	배추절임시 설 기계장비	17종	2015	70	17	100	여량면 유천리 645-13	신규 취득
친환경 축사신축	강돈욱	축사	99.39 m ²	2015	10.8	1	18	북평면 나전리 23-2	신규 취득
친환경 축사신축	김덕래	축사	224m ²	2015	20.6	1	34	정선읍 용탄리 634-7	신규 취득
친환경 축사신축	이경재	축사	328m ²	2015	34.6	1	57	북평면 갈번지길 37	신규 취득
퇴비사신축	김정태	퇴비사	207.9 m ²	2015	14.7	1	37	정선읍 여탄리 300-3 제1동	신규 취득
퇴비사신축	강영학	퇴비사	120m ²	2015	7.1	1	18	정선읍 덕산기길63-4	신규 취득
다목적가축 분뇨처리장비 지원	유흥규	로우더	67HP	2015	15	1	30	임계면 말루길 30	신규 취득
다목적가축 분뇨처리장비	전병욱	로우더	53HP	2015	15	1	38	정선읍 신론길 295	신규 취득

지원									
친환경 축사신축	강돈욱	축사	99.39 ㎡	2015	10.8	1	18	북평면 나전리 23-2	신규 취득
친환경 축사신축	김덕래	축사	224㎡	2015	20.6	1	34	정선읍 용탄리 634-7	신규 취득
친환경 축사신축	이경재	축사	328㎡	2015	34.6	1	57	북평면 갈변지길 37	신규 취득
퇴비사신축	김정태	퇴비사	207.9 ㎡	2015	14.7	1	37	정선읍 여탄리 300-3 제1동	신규 취득
퇴비사신축	강영학	퇴비사	120㎡	2015	7.1	1	18	정선읍 덕산기길 63-4	신규 취득
다목적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유흥규	로우더	67HP	2015	15	1	30	임계면 말루길 30	신규 취득
다목적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전병욱	로우더	53HP	2015	15	1	38	정선읍 신론길 295	신규 취득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최종균	기계	식/무 인자동 방제기	2015	5.7	3	17.1	화암면 금강로 826-7	신규 취득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금	정선군지역사회보장 협의체	43	운영보조금 부적정 집행	'15.2.25	보조금 환수 (347,710원)
2015년 정선군종합사회복지 관 운영보조금	정선군종합사회복지 관	693	운영보조금 부적정 집행	'15.3.3	보조금 환수 (52,000원)

6-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05,370	1,447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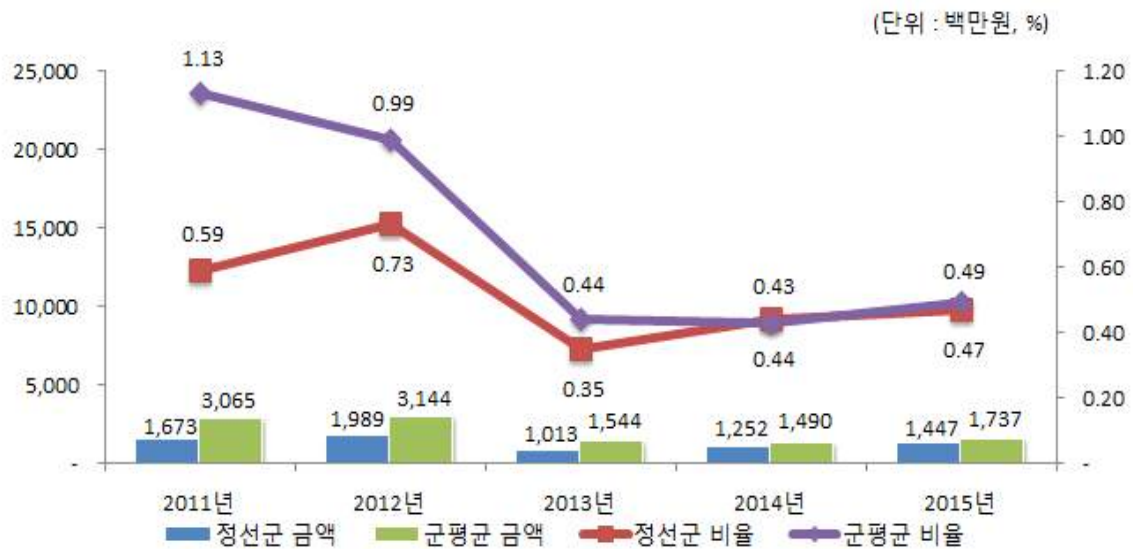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85,408	271,765	291,885	285,894	305,370
행사·축제경비	1,673	1,989	1,013	1,252	1,447
비율	0.59%	0.73%	0.35%	0.44%	0.47%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9,390	683	1,929	1,246	40,073	
청사건립기금		24,058	546	1,318	773	24,604	
사회복지기금		3,972	17	109	92	3,988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01	41	49	8	442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80	0	0	0	10,181	
재난관리기금		642	89	441	352	731	
식품진흥기금		137	-9	12	22	127	

-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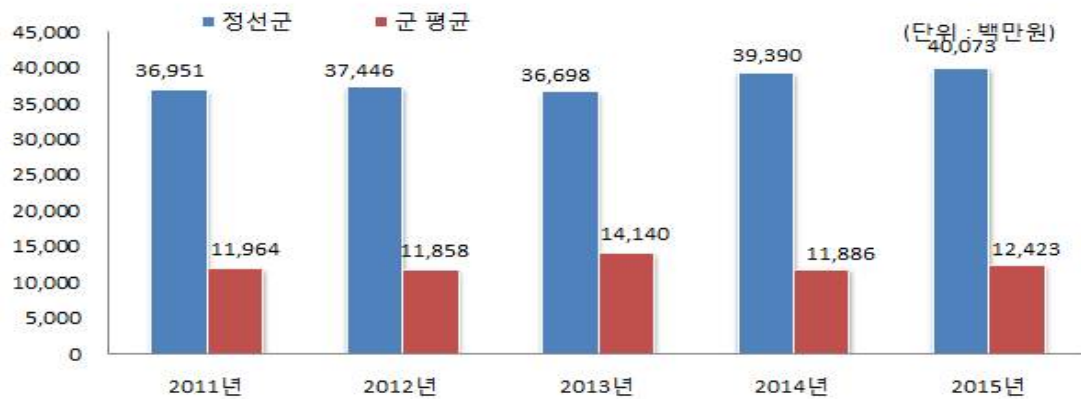
❖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6,951	37,446	36,698	39,390	40,07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정선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 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
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506,436	1,109,474	794	214,306	289	9,657	10,506,941	1,314,123	
토지	13,797	294,415	301	15,730	287	9,456	13,811	300,689	
건물	665	325,561	82	22,126	2	201	745	347,485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5,669	180,345	407	79,503	0	0	6,076	259,848	
기계기구	260	1,760	4	1,000	0	0	264	2,760	
선박	1	27	0	0	0	0	1	27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4	81	0	0	0	0	34	81	
유가증권	10,486,000	306,716	0	95,947	0	0	10,486,000	402,662	
용익물권	2	42	0	0	0	0	2	42	
회원권	8	528	0	0	0	0	8	528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4	5,013	21	392	24	106	361	5,299	
구 매	320	3,773	21	392	10	106	331	4,059	
관리전환	97	1,640	0	0	0	0	97	1,64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3	-401	0	0	14	0	-67	-401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758,883	829,589	1,099,908	1,109,474	1,314,123
물 품	4,243	4,772	4,943	5,013	5,29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373,216	0	0%	875	0.23%	
일 반 회 계	305,370	0	0%	875	0.29%	
특 별 회 계	26,528	0	0%	0	0%	
기 금	41,319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53,777	334,423	357,159	351,876	373,216
출자금(B)	0	0	0	0	0
출자금 총액(C)	5,343	5,343	5,343	5,343	5,343
출자금 비율(B/A)	0%	0%	0%	0%	0%
출연금(D)	1,174	1,265	1,390	1,390	875
출연금 비율(D/A)	0.33%	0.38%	0.39%	0.40%	0.2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정선장학회에 2013년 650백만원, 2014년도 70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정선장학회 기금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함에 따라 2015년 전체 출연금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 연 금	합계	875		
	정선장학회	37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도 정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한국지역진흥재단	5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2015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678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년(재)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5	지방세법 제145조 및 제146조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납부
	3.3기념사업회	100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 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3.3기념사업회 출연금 지급
	강원발전연구원	50		2015년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 납부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금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4	7,078	10,519	
출연	4	7,078	10,519	
기관	4	10	194	
	0	7,068	10,32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6	46,157	27	8,396	9,059	-663	나
공단	시설관리공단	94	141	41	6,017	6,017	0	나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상수도	-2,436	-2,436	-1,723	-1,415	-663
공단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44,605	2,117,373	72,769	2,100,284
부채 총계	15,873	33,076	17,203	32,908
비용 총계	270,876	268,985	-1,891	302,065
수익 총계	332,656	321,977	-10,679	383,68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자체평균
I.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14.56		
	3. 경상수지비율	71.09		
	4. 관리채무비율			
	5. 실질채무비율(광역)	해당없음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8.82		
	7. 통합유동부채비율	4.03		
	8. 공기업부채비율	0.15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2.17		
II.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3.52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22.78		
	11. 지방세징수율	96.89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6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0.27		
	13. 경상세외수입비율	3.71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2.22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1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02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0.70		
	16. 지방보조금비율	12.17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4.80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43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1.34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2.97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2.59		
	19. 인건비절감노력도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20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845		
	22. 행사축제경비비율	0.83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39.05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0.16		
III. 책임성	24. 재정법령준수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1.00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해당없음		
	27. 재정공시노력도	5.00		
	28. 재정분석대응도	-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 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산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능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능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능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해야 하며,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우리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A)	4,433	5,376	5,660	4,336	6,027
비과세	3,763	4,672	4,811	3,601	5,313
감면	670	704	849	735	714
지방세 징수액(B)	30,534	31,403	32,339	33,000	34,644
비과세·감면율(A/A+B)	12.68%	14.62%	14.90%	11.61%	14.82%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4,336	100.00%	6,027	100.00%	1,691	39.00%
일 반 공 공 행 정	619	14.28%	2,197	36.45%	1,578	254.92%
공공질서 및 안전	17	0.39%	21	0.36%	5	27.34%
교 육	208	4.80%	212	3.51%	4	1.71%
문 화 및 관 광	80	1.86%	82	1.36%	1	1.61%
환 경 보 호	0	0.00%	0	0.00%	0	0.00%
사 회 복 지	256	5.90%	257	4.27%	1	0.57%
보 건	24	0.56%	21	0.34%	△4	△14.94%
농 립 해 양 수 산	79	1.83%	74	1.23%	△5	△6.10%
산 업 · 중 소 기 업	2	0.04%	1	0.02%	0	△17.81%
수 송 및 교 통	9	0.20%	10	0.16%	1	11.38%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72	3.97%	140	2.32%	△32	△18.65%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2,851	65.75%	2,991	49.62%	140	4.91%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19	0.44%	21	0.35%	2	10.96%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6,027	5,313	710	3	1	0
보 통 세	6,027	5,313	710	3	1	0
소 계	6,027	5,313	710	3	1	0
주민세	18	10	7	0	0	0
재산세	5,770	5,277	490	2	1	0
자동차세	240	27	212	1	0	0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

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 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정선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0,687	9,571	89.56
여성정책추진사업	24	19	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479	9,372	89.43
자치단체 특화사업	183	180	98.04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작년 정선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51	2,515,563	38	2,448,113	1,939,113	13	67,450	67,450
전년도('14)	52	3,447,672	34	3,344,650	2,481,046	18	103,022	103,022
증감	△1	△932,109	4	△896,537	△541,933	△5	△35,572	△35,572

당해연도(2015)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연 번	유 형 구 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a)	사업 수익 (b)	순원가 (c)=(a)-(b)		
1	③	농업인풍년기원제	2015.02.26.~ 2015.02.26.	풍년기원제례 행사지원	5,000	0	5,000	농업축산과	033-56 0-2376
2	①	아리아리정선기 강 원도게이트볼대회	2015.10.09.~ 2015.10.10.	시군 대항 단체전	25,000	0	25,000	동 계 올 림 픽 지원단	033-56 0-2950
3	③	전국대학동호인연 맹회장배탁구대회	2015.05.16.~ 2015.05.17.	전국대학동호인탁구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	35,000	0	35,000	동 계 올 림 픽 지원단	033-56 0-2950
4	①	정선군수기 강원 도 남녀공도대회	2015.10.09.~ 2015.10.09.	도내 남녀 공도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	15,000	0	15,000	동 계 올 림 픽 지원단	033-56 0-2950
5	③	강원도회장기유도 대회	2015.03.19.~ 2015.03.21.	강원도회장기유도대회, 전 국소년체육대회 강원도대 표2차선발전대회	32,935	0	32,935	동 계 올 림 픽 지원단	033-56 0-2950
6	⑥	정선군 체육인의 밤 행사	2015.12.17.~ 2015.12.17.	선수, 동호회등을 비롯한 체육인의화합의 장 마련	19,395	0	19,395	동 계 올 림 픽 지원단	033-56 0-2950

연 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 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 수익(b)	순원가 (c)=(a)-(b)		
7	③	정선아리랑배 전국동호인바둑대회	2015.10.09.~ 2015.10.10.	전국 동호인 바둑대회	35,000	0	3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8	①	장애인동호인대회	2015.05.15.~ 2015.08.07.	게이트볼대회, 트래킹	5,000	0	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9	③	강원도교육감기 초·중·고 정구대회 겸 전국소년체육 대회 강원도 선발전대회	2015.03.18.~ 2015.03.21.	정구대회 겸 전국소년 체육대회 강원도 2차 선발전	21,000	0	21,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0	③	생활체육 군동호인대회	2015.01.01.~ 2015.12.31.	축구 외 12개종목 대 회 지원	30,000	0	3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1	③	강원학생 학년별 육상경기 대회 및 역전마라톤대회	2015.09.04.~ 2015.09.04.	초중고 학년별 육상 및 역전마라톤대회	12,152	0	12,152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2	③	제8회 아시아 청소년 태 권도 선수권 최종선발대 회 겸 강원도대표 2차 선발대회	2015.02.24.~ 2015.03.01.	태권도 품새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140,000	0	14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3	③	정선아리랑 국민생활체 육 오픈 배드민턴대회	2015.05.02.~ 2015.05.03.	전국 배드민턴대회	60,000	0	6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4	①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015.04.29.~ 2015.04.30.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70,000	0	7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5	③	강원도 어린이 태권왕 대회	2015.04.24.~ 2015.04.26.	어린이 태권도 대회	34,931	0	34,931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6	③	중부내륙지역(3개도)남녀 궁도대회	2015.05.23.~ 2015.05.23.	3개도 궁도대회 개최	15,000	0	1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7	③	2015 춘계 여자축구연맹전	2015.03.27.~ 2015.04.07.	한국 여자축구 연맹전	220,000	0	22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8	③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2015.09.21.~ 2015.09.23.	유도대회	20,000	0	2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9	④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 제, 정선아리랑제	2015.10.09.~ 2015.10.12.	개막식, 각종체험회 등 12개부문 53세부행사 136 체험종목	525,000	40,000	485,000	문화관광과	033-560-2549
20	④	정선인형극제	2015.07.30.~ 2015.08.02.	2015 정선꼭두놀이잔치	50,000	25,000	25,000	문화관광과	033-560-2562
21	②	정선5일장 이벤트행사	2015.04.16.~ 2015.11.15.	정선아리랑 소리공연 및 특별초청 문화공연 등반대회, 산신제, 소 원성취 표찰달기, 아 리랑경창대회 등	137,947	0	137,947	문화관광과	033-560-2368
22	③	민등산 역새꽃축제	2015.09.18.~ 2015.11.01.	리랑경창대회 등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33-560-2569
23	③	고한 함백산 야생화축제	2015.08.01.~ 2015.08.09.	야생화 및 사진전시, 야생화 탐방길기 등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33-560-2569
24	④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2015.10.09.~ 2015.10.12.	세계민요 초청공연, 아 리랑 주재관 운영, 전 국 아리랑 경창대회 등	400,000	280,000	120,000	문화관광과	033-560-2549
25	③	그림 바위아트페스티벌 및 정선풍경 미술대전	2015.10.24.~ 2015.10.25.	2015 그림바위아트페 스티벌 및 제2회 정선 풍경 미술대전	59,708	0	59,708	문화관광과	033-560-2549
26	①	사랑 나눔 송년음악회	2015.12.16.~ 2015.12.16.	지역동아리 밴드공연 및 초대가수 공연	13,000	0	13,000	문화관광과	033-560-2562
27	③	사람과 그림 그림전	2015.06.11.~ 2015.06.14.	2015년 사람과 그림 열 두번 째 그림전	2,000	0	2,000	문화관광과	033-560-2549

연 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a)	사업 수익(b)	순원가 (c)=(a)-(b)		
28	③	사북진석회 수석전시회	2015.10.10.~ 2015.10.11.	제20회 사북진석회 수석 전시회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33-560- 2549
29	③	백두대간 산소길 걷기 축제	2015.10.18.~ 2015.10.18.	산소길 걷기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33-560- 2569
30	④	정선아라리 창작가사 발표회	2015.12.09.~ 2015.12.09.	2015 정선아라리 창작가 사 발표회	10,000	5,000	5,000	문화관광과	033-560- 2562
31	④	정선향교 춘계 추계 석전대제	2015.03.22.~ 2015.09.18.	정선향교 석전대제 행사 지원 보조 (3.22.춘계/9.18.추계)	8,000	0	8,000	문화관광과	033-560- 2549
32	④	정선향교 기로연	2015.10.27.~ 2015.10.27.	관리나 일반인을 위로하 고 예우하기 위한 행사	2,700	0	2,700	문화관광과	033-560- 2549
33	③	두위봉 철쭉축제	2015.06.05.~ 2015.06.07.	등반대회, 노래자랑 등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33-560- 2569
34	③	강원 K-POP콘서트	2015.10.03.~ 2015.10.03.	정상급 K-POP스타 7개팀 공연	200,000	130,000	70,000	문화관광과	033-560- 2549
35	②	2015 아라리 락 마당극	2015.11.01.~ 2015.11.21.	정선5일장 활성화를 위한 아라리 락 극 공연	36,000	29,000	7,000	문화관광과	033-560- 2368
36	④	고성산성제	2015.10.16.~ 2015.10.17.	산성제례 및 환경정화	1,500	0	1,500	문화관광과	033-560- 2564
37	②	정선토속음식축제	2015.04.24.~ 2015.04.26.	토속음식 전시 및 판매, 토 속음식 시연 및 체험, 산촌 생활문화 전시 및 판매	10,000	0	10,000	북평면	033-560- 2765
38	④	사북석탄문화제	2015.07.24.~ 2015.07.26.	행사 홍보물 제작 및 무 대설치	9,000	0	9,000	사북읍	033-560- 2626
39	④	아우라지 뗏목축제	2015.07.31.~ 2015.08.01.	홍보물 제작 및 무대시설 임차	9,900	0	9,900	여량면	033-560- 2797
40	④	노주산 이성대 율곡 제례	2015.10.28.~ 2015.10.28.	제례행사	1,350	0	1,350	여량면	033-560- 2797
41	③	4개면 체육대회	2015.12.03.~ 2015.12.03.	체육행사, 화합한마당(죽 구, 배구 이벤트 등)	10,000	0	10,000	임계면	033-560- 2785
42	③	정선군 이반장 한마 음대회	2015.05.07.~ 2015.05.07.	체육행사, 화합한마당	33,000	0	33,000	자치행정과	033-560- 2236
43	③	정선군 자율방범연합 대 가족체육대회	2015.11.08.~ 2015.11.08.	직무 및 친목도모 체육대회	8,000	0	8,000	자치행정과	033-560- 2235
44	③	정선군 해맞이 행사	2015.01.01.~ 2015.01.01.	2015안녕기원제, 모닥불 밝히기, 떡국 어묵 나눠 먹기, 소망풍선 날리기, 해맞이, 달집태우기 등	10,000	0	10,000	자치행정과	033-560- 2238
45	⑥	동강 할미꽃 축제	2015.03.27.~ 2015.03.29.	동강 할미꽃 식재, 사진 전, 공연 등 문화행사	5,000	0	5,000	정선읍	033-560- 2606
46	①	경로잔치	2015.05.06.~ 2015.05.15.	읍면별 자체 경로잔치 추진	43,000	0	43,000	주민생활지원과	560-202 3
47	⑥	강원사랑 3대 기획 행사	2015.09.03.~ 2015.09.04.	제3회 고용대상 시상식, 강원경제특강 등	18,000	0	18,000	지역경제과	033-560- 2438
48	⑥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2015.09.10.~ 2015.09.11.	강원경제인 국제교류연합회 총회, 강원경제인상 시상 등	18,000	0	18,000	지역경제과	033-560- 2438
49	③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2015.04.25.~ 2015.04.25.	자전거 대행진	7,000	0	7,000	지역경제과	033-560- 2438
50	③	화암약수제	2015.04.25.~ 2015.04.26.	마을대항 운동경기, 민속 대회, 정선아리랑경연대 회, 약수에 밥말아먹기 등	10,000	0	10,000	화암면	033-560- 2646
51	②	정선군 곤드레산나물 축제	2015.05.22.~ 2015.05.25.	산나물 등 직거래장터, 먹거 리 장터, 음식체험, 정선아 리랑 시연 등 문화행사	39,045	0	39,045	환경산림과	033-560- 2426

❖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6】과 같습니다.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사업은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정선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68	86,798	176	2,981	11.99%	3.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75	268	296	458	176
	금액	3,313	5,209	5,898	13,023	2,98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 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문화 시설	박물관	삼탄아트마인	2003- 08-20	위탁	11,400	46,030	15	42,983	11,065			
체육 시설	종합 운동장	정선종합 경기장	2011	위탁	14,327	22,218	9	260,095	86,400		96,872	-96,872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시설유형 : 문화·체육·복지·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 접수·처리기간(' 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중	
2		2		2		1	1	2	2		없음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 지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서식으로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12. 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4,64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31,403	32,339	33,000	34,644	100	3.33
주민세	394	390	1,638	1,828	5.28	66.79
재산세	4,954	5,358	5,654	5,834	16.84	5.6
자동차세	4,667	4,963	5,276	3,980	11.49	-5.17
담배소비세	4,263	4,167	3,993	4,681	13.51	3.17
지방소득세	16,754	17,320	16,103	17,980	51.9	2.38
지난년도수입	369	140	337	341	0.98	-2.60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1 / 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62,501	144,376	110,230	41.99%	76.35%

8-14. 감사결과

우리 정선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부터 2015년도에 처분이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 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강원도	2016.6.9	정선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도·감독 소홀 (과다하게 복지수당을 취득한 종사자에게 보조금 76천원 회수)	시정 (회수 76천원)	회수 (완료)
강원도	2016.6.9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 취득세 등 142건 259,070천원을 부과 누락하거나 미 추징함)	시정 (추징 259,070천원)	과세예고 완료 (추진중)
강원도	2016.6.9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아영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요사업 변경 때에는 내부방침을 서면으로 받은 후 처리하고 미정산분에 대하여 회수)	시정 (회수 24,455천원)	추진중
감사원	2016.7.25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및 업무처리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규정개정 민간인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철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 여비환수 등 관리철저	규정개정 (9월말까지)

※ '15 ~ '16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 2015회계연도에 우리 정선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받은 사항은 없으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 ☐ 우리 정선군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별첨7】 과 같습니다.

9-2. 지방채 발행사업

- ☐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9-3. 민간투자사업

- ☐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정선군 남면 공고 제2016-8호

2016 하반기 남면복지회관 교양강좌 강사모집 공고

- 교양강좌 운영기간 : 2016. 09. 05. ~ 12. 02.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운영장소 : 남면복지회관 강당 및 다목적실
- 운영대상 : 정선군민(강좌별 정원 초과 시 남면주민 우선 선발)
- 강사모집 : 3강좌(통기타, 노래교실, 색소폰)

강좌명	시 간	강 의 실	인원		비고
			강사	수강생	
통기타	19:00~21:00(화, 목)	다목적실	1명	15명	
노래교실	19:00~21:00(월, 수)	다목적실	1명	15명	
색소폰	19:00~21:00(월, 수)	연회장	1명	15명	

※ 강좌 운영요일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주 2회~3회 운영 ※ 단, 정원 미달 시 강좌 폐강조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08. 19.(금) ~ 09. 01.(목)
- 접수방법 : 남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접수(문의 : 560-2656)
- 강사선정 : 『자체심사기준표』에 의함.
- 모집인원 : 강사 3명(통기타, 노래교실, 색소폰 각1명)
- 확정통보일 : 2016. 09. 02.(휴대폰 메시지 등 개별 통보)
- 강사지원서류
 - ① 강사등록(채용)지원서 1부, ② 강사이력서 1부, ③ 강의계획서 및 과목 소개서 각 1부,
 -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강사등록(채용)지원서

사 진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과 목			
최종학력	학 교 과 (년 졸업, 수료)			
취 미		특 기		
현 근무처 및 소속		연락처		
자격증		면허증		
주요경력				
본인은 귀 남면복지회관의 ()과목 강사로 등록(채용)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면복지회관 운영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강사등록지원서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 및 소개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격증, 면허증,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해당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강 의 계 획 서

- 과 목 명 :
- 강 사 명 :

과 목 소 개			
목표 및 방향			
강 의 계 획			
월 별	주 별	강 의 내 용	비 고
제1월	1주		
	2주		
	3주		
	4주		
	주		
제2월	1주		
	2주		
	3주		
	4주		
	주		
제3월	1주		
	2주		
	3주		
	4주		
	주		
제4월	1주		
	2주		
	3주		
	4주		
	주		

과 목 소 개 서

과 목 명	
과목소개	
교육내용	
교재명(가격)	
재료비용 (월 평균)	
수강생준비물	

정선군 남면공고 제2016-7호

2016 하반기 남면복지회관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 공고

- ☞ 강좌운영기간 : 2016. 09. 05. ~ 12. 02.
- ☞ 모집대상 : 남면 면민 및 정선군 관내거주자
-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선착순
- ☞ 접수기간 : 2016. 08. 19. ~ 09. 01.(공휴일 제외)
- ☞ 수 강 료 : 월 5,000원
- ☞ 강 좌 명

(※ 교육시간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강좌명	시 간	강 의 실	인원	비고
일반	통 기 타	19:00~21:00(화, 목)	다목적실	15	
	노래교실	19:00~21:00(월, 수)	다목적실	15	
	색 소 폰	19:00~21:00(월, 수)	연 회 장	15	

☞ 수강생 유의사항

- 1인 2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재료 및 교재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입니다.
-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의 70% 미만인 과목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 개강 3일전 수강 취소나 강좌 미 개설 시 수강료 전액 환불합니다.
- 신청자 외 대리수강 및 청강은 불가합니다.
- 별도 개강식은 없으며 강좌별 해당 요일에 강의실 입실하여야 하며, 수강 중 지역 행사에 자율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강확정 : 09월 02일(휴대전화 메시지 등 개별 통보)
- ❖ 접수 및 문의처 : 남면사무소 2층 총무부서(☎ 560-2656, 2651)

접수번호 : _____

교양취미강좌 수강 신청서

강좌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위와 같이 남면복지회관 교양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인)

남면복지회관 운영위원장 귀하

※ 유의사항

1.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2. 1인 2과목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강좌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의 70% 미만일 경우 개설되지 않습니다.
4. 수강료는 월5,000원입니다.(단, 수업에 필요한 비품은 개별 준비)